

부 산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14느단○○○○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 구 인 이AA

관 계 인 장BB

사 건 본 인 장CC

주 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을 "이(李)"로, 본을 "DD(○○)"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이 유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친부인 관계인의 협박, 허위신고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친모인 청구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관계인은 2008. 2. 5. 청구인과 협의 이혼 후 꾸준히 사건본인을 면접 교섭하였는데, 2010. 5.경부터 청구인의 거부로 면접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관계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1느단○○호로 면접교섭 허가 심판을 구하였고, 매월 1회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는 심판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이에 관계인은 부산가정법원 2012즈기○○호 이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청구인에게 위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라고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거부하는 한편 사건본인과 친부와의 관계 단절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아직 재혼하지 않은 상태로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인해 사건본인이 겪을 불이익은 없는 점, 친부인 관계인은 명시적으로 성과 본의 변경에 반대하며 면접 교섭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고 있는바, 사건본인의 장래를 위하여 사건본인과 친부와의 관계 유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본인의 나이가 만 8세에 불과하여 자신의 성과 본에 대한 의사를 밝히기에는 너무 어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건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

다.

2014. 9. 12.

판사 조 지 희